

**Q** ● 지하 6층, 지상 27층 규모의 1급 방화관리 건물입니다. 25층 전체를 식당으로 사용 중 주방 직하층인 24층 위치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업무에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방바닥에 고무판을 전체적으로 시공하고자 하는데, 방염제품이 아닌 고무제품을 주방에 시공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A**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4항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은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3항에 “실내장식물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항에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 물품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법규로 보면 일반제품의 시공도 가능하다고 사료되으나 자세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 갑종 방화문(양개문의 경우)에도 성능인정된, 즉 성능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양개방화문의 경우도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32호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성능시험기관인 방재시험연구원은 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국내 소방 및 건축관련 법규는 물론 KS, ISO, IMO, UL, ASTM 등 국내외 각종 시험기준에 의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를 대행하여 내화구조 방화문에 관한 지정시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 화재보험에 재조달가액특약이 있는데, 시가로 가입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화재보험은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의 목적에 대한 법률상 실제 가치인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실손보상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은 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재조달가액으로 보험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하고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가입하였을 경우 시가가 아닌 재조달가액으로 보상을 합니다.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54호와 관련 내화충전구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불연재료로 밀실하게 시공 시 경화 후 균열 없을 것이라는 규정에 맞으면 내화충전구조로 인정이 되나요?
2. 내화충전해야 할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모양·형태에 따른 시공방법이 규정되어 있는지요?
3. 내화충전 후 현장에서 성능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54호제 2항 7조 내에서 규정한 성능확인된 재료 또는 시스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1. 내화충전구조의 인정범위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불연재료) 령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를 등 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위의 재료(위 6조에서 규정하는 시방서, 산업표준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로 밀실하게 시공하여 경화 후 균열이 없다면 내화충전구조로 인정이 됩니다.

2. 내화충전 시공방법을 법이나 시험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3. 내화충전구조에 대한 내화성능은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반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54호의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4. 위 고시에 따라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하여 성능확인된 구조는 방재시험연구원 홈페이지 중 성능인정현황에 게시하고 있습니다.